

사 업 안 내 서

「2024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2024. 3.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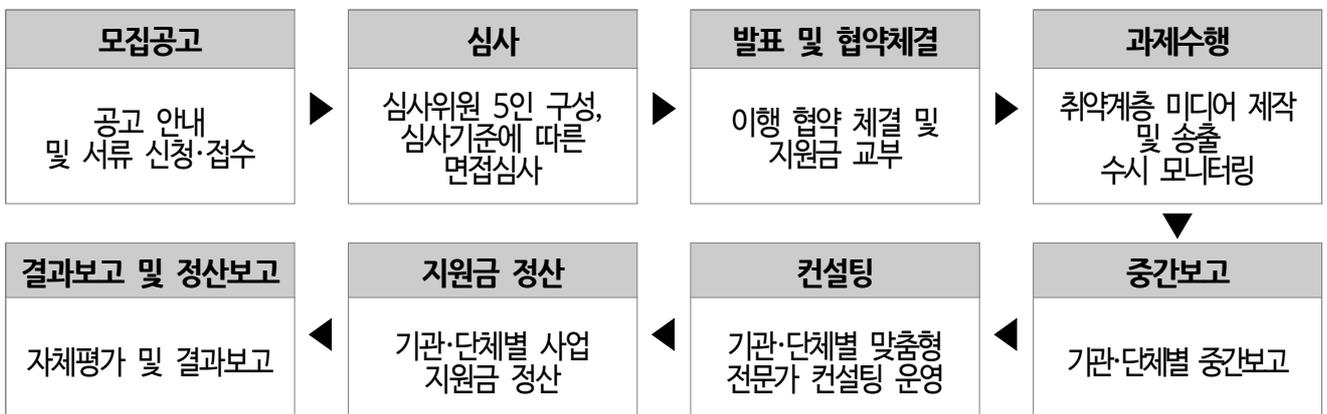
-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 및 사회 안전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콘텐츠 소비자 또는 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활동하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제시

□ 사업방향

-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역량과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분야별 교육·제작·확산 지원체계 강화
-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 권익 보호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 확산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의 비전을 지향하는 기관·단체 발굴

□ 사업개요

- 사업명 :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
- 사업대상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이 주체가 되어 미디어를 생산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 지원내용 :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을 위한 사업운영비 일부 지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 지원규모 : 3개소(총 50,000천원 / 3개 단체)
- 운영절차



2

지원내용

구 분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지원대상	취약계층이 주체가 되어 미디어를 생산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지원자격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기준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를 통한 기관·단체 발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위한 제작비·운영비 지원 •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공익정책 동향·미디어 기술 등) 교육 확산 • 콘텐츠의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 및 캠페인 촉진 ○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운영 및 사업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확산을 위한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활동비, 제작활동비 ○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확산을 위한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활용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임차비, 홍보인쇄비, 강사비, 회의비 등 ○ 단체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특성별 활동 체계 조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 매칭 	
지원규모 수	1개소	2개소
지 원 액 (천원)	20,000천원×1개소=20,000천원	15,000천원×2개소=30,000천원
자부담액 (10% 이상)	개소별 2,000천원 이상	개소별 1,500천원 이상

3

공모일정 및 제출서류

□ 공모일정

- 공고기간 : 2024. 3. 5.(화) ~ 3. 29.(금)
- 접수기간 : 2024. 3. 25.(월) ~ 3. 29.(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ofjeju.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click0925@ofjeju.kr) 또는 방문 제출
 - 접수 마감 시(3. 29. 금 17:00)까지 도착하지 않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붙임2. 서식1)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간 중복 내용을 최소화하고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 · 지정 양식에 작성, 날인하여 제출 ·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2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2)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붙임2. 서식3)		
4	심사위원 추천표(붙임2. 서식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형태에 따라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증, 법인설립허가증,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등 해당하는 증명서류 제출 · 각 발급기관별 PDF 제출 · 납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6	법인 등기부등본(해당기관만)		
7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9	기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4

평가내용

□ 심사일정

- 서류심사 발표 : 2024. 4. 2.(화) ~ 4. 3.(수)
 - 서류심사 선정 기관·단체는 개별 연락 및 면접일자 및 시간 안내 ※ 미선정 시 개별 연락하지 않음
- 면접심사일 : 2024. 4월 경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자격심사 및 미비서류,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 2차 면접심사: 외부 전문위원 5인 인터뷰 심사
 - ※ 예비심의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및 접수자 추첨을 통한 선정
- 선정방법: 면접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최고·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점수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사업 타당성	① 본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10
	② 취약계층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계획의 공익성	10
콘텐츠 제작·확산 역량	③ 콘텐츠 제작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④ 콘텐츠 기반 확산 활동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단순히 송출에 그칠게 아니라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 내에 확산시키기 위한 상영회, 토론회, 포럼 등의 행사 및 캠페인	15
	⑤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 계획에 대한 의지와 구체성 ※ 단체별 맞춤형 교육(공익정책, 미디어 제작 교육 등)	15
	⑥ 폐쇄자막, 수어동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 여부	10
사업 운영 역량	⑦ 취약계층 참여도 및 자발적 참여 방안	10
	⑧ 콘텐츠 제작·확산 계획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 여부	10
총점		100

5

추진일정

세부내용	일정
공고기간	2024. 3. 5.(화) ~ 3. 29.(금) 17:00까지
접수기간	2024. 3. 25.(월) ~ 3. 29.(금) 17:00까지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4. 4. 2.(화) ~ 4. 3.(수) ※ 개별연락
면접심사	2024. 4월 중 ※ 진흥원 B1 회의실에서 진행
최종 심사결과 발표	2024. 4월 중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협약 체결	2024. 4월 중
과제수행 및 모니터링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2. 6.(금)
중간보고서 제출 마감	2024. 8. 1.(목)
전문가 컨설팅	2024. 8월 중
사업비 집행 마감	2024. 11. 30.(토)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2024. 12. 6.(금)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구분		편성기준	집행기준	증빙서류																			
비목	세목																						
활동비	운영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에 필요한 운영 담당자의 활동에 대한 경비 -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자부담으로 편성 ※ 총 사업비의 10% 이내 책정 	1시간 당 11,423원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활동기록부(양식) ② 지급영수증(양식) ③ 이체확인증 ④ 원천징수 영수증 																			
	제작 활동비 (취약계층 자체 제작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필요한 콘텐츠를 취약계층이 직접 수행한 활동비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제작단가</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영상</td> <td>1분당 10만원</td> <td>최대 100만원 이하</td> </tr> <tr> <td rowspan="2">기사</td> <td>단신 1건 2천원</td> <td>300자 내외</td> </tr> <tr> <td>기획·취재 1건 5만원</td> <td>700자 내외</td> </tr> <tr> <td>카드뉴스</td> <td>1페이지 2만원</td> <td>최대 16만원 이하</td> </tr> <tr> <td>수어</td> <td>10만원</td> <td>건당</td> </tr> <tr> <td>음성 배역료</td> <td>5만원</td> <td>건당</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참여인력만 해당(외부 참여인력 편성 불가) 	분야	제작단가	지급기준	영상	1분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이하	기사	단신 1건 2천원	300자 내외	기획·취재 1건 5만원	700자 내외	카드뉴스	1페이지 2만원	최대 16만원 이하	수어	10만원	건당	음성 배역료	5만원	건당	
분야	제작단가	지급기준																					
영상	1분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이하																					
기사	단신 1건 2천원	300자 내외																					
	기획·취재 1건 5만원	700자 내외																					
카드뉴스	1페이지 2만원	최대 16만원 이하																					
수어	10만원	건당																					
음성 배역료	5만원	건당																					
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인,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제작단가</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수어</td> <td rowspan="3">실비</td> <td rowspan="3">취약계층 자체 제작 시 해당</td> </tr> <tr> <td>음성 배역료</td> </tr> <tr> <td>기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인력만 해당(내부 참여인력 편성 불가) ※ 외부 제작사 위탁수행 시 편성 불가 	분야	제작단가	지급기준	수어	실비	취약계층 자체 제작 시 해당	음성 배역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작 참여확인서(양식) ② 콘텐츠 결과물 ③ 전문가 프로필(양식) ④ 지급영수증(양식) ⑤ 계좌이체 확인증 ⑥ 원천징수 영수증 											
	분야	제작단가	지급기준																				
	수어	실비	취약계층 자체 제작 시 해당																				
	음성 배역료																						
기타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필요한 콘텐츠를 외부 제작사에 위탁수행 하는 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제작단가</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영상</td> <td>1분당 20만원</td> <td>최대 200만원 이하</td> </tr> <tr> <td>카드뉴스</td> <td>1페이지 4만원</td> <td>최대 32만원 이하</td> </tr> <tr> <td>정기 간행물</td> <td>실비</td> <td>디자인 및 인쇄포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제작사만 해당(내부 참여인력 편성 불가) ※ 제작비 내 장비, 수어, 내레이션 등 포함 (외부 제작사 참여 시 전문가 활용비, 수신유지비, 임차비 편성 불가)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책정 	분야	제작단가	지급기준	영상	1분당 20만원	최대 200만원 이하	카드뉴스	1페이지 4만원	최대 32만원 이하	정기 간행물	실비	디자인 및 인쇄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200만원 미만 카드결제 시 ① 제작 기획안(양식) ② 콘텐츠 결과물 ③ (비교) 견적서 및 납품서 ④ 카드 영수증 (추가) 200만원 이상 계산서 발행 시 ⑤ 계약서 ⑥ 과업지시서 ⑦ 검수조서 ⑧ 사업자등록증 ⑨ 통장사본 ⑩ 전자세금계산서 ⑪ 계좌이체 확인증 								
분야	제작단가	지급기준																					
영상	1분당 20만원	최대 200만원 이하																					
카드뉴스	1페이지 4만원	최대 32만원 이하																					
정기 간행물	실비	디자인 및 인쇄포함																					
수선 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플랫폼 유지 비용 ※ 외부기업 위탁수행 시 임차비 편성 불가 	실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활용 사진대지(양식) ② 견적서 및 납품서 ③ 카드영수증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임차 경비 ※ 외부기업 위탁수행 시 임차비 편성 불가 ※ 총 사업비의 30% 이내 책정 	실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활용 사진대지(양식) ② 견적서 및 납품서 ③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경우 계좌이체 증빙) 																				
홍보 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인쇄물 	실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진대지(양식) ② 견적서 및 납품서 ③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경우 계좌이체 증빙) 																				

구분		편성기준	집행기준	증빙서류																											
비목	세목																														
	재료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총 사업비의 5% 이내 책정	실비정산	① 물품사진대지(양식) ② 견적서 및 납품서 ③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경우 계좌이체 증빙)																											
	강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강사비 ※ 내부참여인력은 강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 - 진흥원 내부기준 규칙 준용 ※ 진흥원 실비보상 기준 참고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1급</td> <td>1시간 23만원 초과 12만원</td> </tr> <tr> <td>2급</td> <td>1시간 10만원 초과 8만원</td> </tr> <tr> <td>3급</td> <td>시간 당 7만원</td> </tr> <tr> <td>보조강사</td> <td>시간 당 5만원</td> </tr> </tbody> </table>	유형	지급액	1급	1시간 23만원 초과 12만원	2급	1시간 10만원 초과 8만원	3급	시간 당 7만원	보조강사	시간 당 5만원	① 강사프로필(양식) ② 강의보고서(양식, 사진) ③ 출석부(양식) ④ 지급영수증(양식) ⑤ 계좌이체 확인증 ⑥ 원천징수 영수증																	
	유형	지급액																													
	1급	1시간 23만원 초과 12만원																													
	2급	1시간 10만원 초과 8만원																													
3급	시간 당 7만원																														
보조강사	시간 당 5만원																														
자문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회의 수당 ※ 외부인사만 해당 ※ 최대 3시간 이내	1시간 당 100,000원	① 자문회의록(양식, 사진) ② 참석자명부(양식) ③ 지급영수증(양식) ④ 이체확인증 ⑤ 원천징수 영수증																												
회의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의 식비·다과비 ※ 식비+다과비 포함 1인 15,000원 이내 ※ 외부인 참석 없이 사업 참여자만 참석한 회의비는 불인정	1인당 15,000원 이내	① 회의록(양식, 사진) ② 참석자명부(양식) ③ 카드영수증																												
기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체 수수료, 우편료, 입장료 등 - 이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성은 진흥원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편성요	실비정산	①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② 거래내역서																												
공통사항		※ (예시) 자체제작+위탁수행 공동 제작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예산과목</th> <th>보조금</th> </tr> <tr> <th>비목</th> <th>세목</th> <th>산출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활동비</td> <td rowspan="2">제작 활동비</td> <td>① 영상 자체 제작활동비(연출) 10분 기준*5건 ((100,000원*10분)*30%)*5건 =1,500,000원</td> </tr> <tr> <td>② 영상 자체 제작활동비(작가) 10분 기준*5건 ((100,000원*10분)*30%)*5건 =1,500,000원</td> </tr> <tr> <td rowspan="2">운영비</td> <td rowspan="2">일반 수용비</td> <td>① 영상 제작 위탁수행비(촬영) ((200,000원*10분)*20%)*5건 =2,000,000원</td> </tr> <tr> <td>② 영상 제작 위탁수행비(편집) ((200,000원*10분)*20%)*5건 =2,000,000원</td> </tr> </tbody> </table>		예산과목		보조금	비목	세목	산출내역	활동비	제작 활동비	① 영상 자체 제작활동비(연출) 10분 기준*5건 ((100,000원*10분)*30%)*5건 =1,500,000원	② 영상 자체 제작활동비(작가) 10분 기준*5건 ((100,000원*10분)*30%)*5건 =1,500,000원	운영비	일반 수용비	① 영상 제작 위탁수행비(촬영) ((200,000원*10분)*20%)*5건 =2,000,000원	② 영상 제작 위탁수행비(편집) ((200,000원*10분)*20%)*5건 =2,000,000원	- 공동 제작 시 역할별 제작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역할</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영상</td> <td rowspan="4">공동 제작</td> <td>연출</td> <td>30%</td> </tr> <tr> <td>작가</td> <td>30%</td> </tr> <tr> <td>촬영</td> <td>20%</td> </tr> <tr> <td>편집</td> <td>20%</td> </tr> </tbody> </table>	분야	역할	비율	영상	공동 제작	연출	30%	작가	30%	촬영	20%	편집	20%
예산과목		보조금																													
비목	세목	산출내역																													
활동비	제작 활동비	① 영상 자체 제작활동비(연출) 10분 기준*5건 ((100,000원*10분)*30%)*5건 =1,500,000원																													
		② 영상 자체 제작활동비(작가) 10분 기준*5건 ((100,000원*10분)*30%)*5건 =1,500,000원																													
운영비	일반 수용비	① 영상 제작 위탁수행비(촬영) ((200,000원*10분)*20%)*5건 =2,000,000원																													
		② 영상 제작 위탁수행비(편집) ((200,000원*10분)*20%)*5건 =2,000,000원																													
분야	역할	비율																													
영상	공동 제작	연출	30%																												
		작가	30%																												
		촬영	20%																												
		편집	20%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작비, 홍보비, 임차비 등 5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2곳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납품서 증빙 - 자산취득비 책정 불가 - 원천징수 세액(기타소득 8.8%, 사업소득 3.3% 공제) - 외부 거래처 200만원 미만 대금집행 시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외부 거래처 200만원 이상 대금집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체계약 시행 (운영활동비 및 제작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등 인력 대상 지급 건 제외) - 증빙서류 (양식)은 선정된 이후 배포																															

□ 사업비 집행기간

- 사업자의 자체부담금 및 지원금에 대한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며,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는 2024년 12월 6일까지로 함

□ 사업비 사용원칙

- 모든 지출은 건별로 내부기안문 필수 첨부
- 인력 대상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대금집행이 아닌 경우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운영활동비 및 제작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등 인력 대상 지급 건 제외
- 총 사업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중간점검 및 정산보고 시 증빙서류의 적절성을 검토, 보완서류를 요청하거나 지출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이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흥원은 기관 및 단체에 해당 사업비를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선정 후 지원결정액 및 비목별 편성기준에 의거 예산계획서 별도 제출 필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분류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예산 집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사업예산 변경 신청 및 사전승인 후 사용하여야 함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예산집행은 [붙임 2] <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물 및 홍보자료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로고 노출 및 지원 사실 표기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별도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자부담 매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 보증금액은 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30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제작 및 송출기간 등에 따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상호 협의하여 별도기간 산정 가능

□ 수행 및 사업비 관리

- 수행기관 및 단체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 비·세목 간 예산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 보조비목(활동비-운영비) 간 예산변경 혹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예산변경 시 사전승인 후 변경 사용 / 10% 미만 변경 및 세목 간 예산변경 시 변경 사용 후 사후 보고
 - ※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 집행은 정산 시 불인정
- 수행기관 및 단체는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존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
-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체크)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가능.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및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하여 추가 증빙하여야 함
- 수행기관 및 단체는 사업수행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진흥원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행기관 및 단체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협약종료일 이후에는 사업비의 집행이 불가함

□ 준수사항

- 지원결정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이며, 자부담금은 100% 집행 원칙
-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비목정의에 따른 집행 및 증빙기준, 증빙서류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비 집행액이 불인정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절차

단계	세부내용
1. 중간보고서 제출	• 협약체결일~24.7.31일까지의 집행자료 취합 및 증빙서류 제출(2024.8.1.)
2. 정산준비	• 정산자료 취합 및 관리기관에 대한 정산보고 준비
3. 정산보고서 제출	• 진흥원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증빙서류 및 기타 결과물 제출(~2024.12.6.)
4. 집행실적 검토 후 불인정 금액 확정 및 반납	• 제출된 서류상의 지출 및 증빙자료 검토 • 필요 시 추가 증빙 요구 • 불인정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을 진흥원 지정계좌로 반납

□ 집행내역별 공통 증빙사항 및 불인정 기준

구분	공통사항								
불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경우 •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지원금 일체 • 사업비 전용카드 또는 전용통장을 통한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간이영수증 등 집행증빙이 수기인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 								
	<table border="1"> <tr> <td>유흥업종</td> <td>‘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td> </tr> <tr> <td>위생업종</td> <td>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 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td> </tr> <tr> <td>레저업종</td> <td>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사교춤,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등</td> </tr> <tr> <td>사행업종</td> <td>카지노, 복권방, 오락실</td> </tr> </table>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 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사교춤,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 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사교춤,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 신청기관 및 단체가 개인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일과제 중복지원 금지
 - ※ 신청일 현재 중앙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제를 지원받아 진행 중인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수행을 중단·포기하거나 사업기간 내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수행 모니터링 또는 중간 컨설팅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및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참여 제한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선정 후에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사업 취소 및 지원금 반납 조치

9

문의처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교육운영팀 고경욱 주임연구원(☎ 064-735-0615)
- 문의 가능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